

p.16

기 존	경정청구 (개산과 동일)	확정보험료 신고기한에 개선보험료 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 할 때에는 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.
수 정	경정청구 (개산과 동일)	확정보험료 신고기한에 확정보험료 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 할 때에는 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.

p.31

기 존	019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를 산재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. ()
수 정	020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산재법 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. ()
기 존	019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를 징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. ()
수 정	020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징수법 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. ()

p.33

기 존	040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이며,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각 사업 및 사업장별로 계산한다(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). ()
수 정	040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이며,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각 사업 및 사업장별로 계산한다. () 040: (X)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.

p.34

기 존	048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하수급인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원수인 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()
수 정	048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하수급인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원수급인 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()

p.34

기 존	049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양도 또는 합병 후에 적용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()
수 정	049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연도와 관계 없이 양도 또는 합병 후에 적용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()

p.35

기 존	063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,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,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()
수 정	맞는 지문입니다.

p.37

기 존	081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,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는 공제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()
수 정	081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,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만 공제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()

p.44

기 존	147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5천만원 이고 국세가 3천만원, 지방세가 3천만원, 체납된 보험료가 3천만원인 경우는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()
수 정	147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1억 5천만원 이고 국세가 3천만원, 지방세가 3천만원, 체납된 보험료가 3천만원인 경우는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()

p.60

기 존	28번 문제해설 ③ 10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대통령령에 의할 경우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24 ,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0이다(징수법 §49의2, 징수령 §56의6).
수 정	③ 10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대통령령에 의할 경우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 ,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0이다(징수법 §49의2, 징수령 §56의6).

p.68

기 존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e0ff; margin-bottom: 5px;">〈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〉</div> 농업·임업·어업·수렵업 중 법인 아닌자의 사업 + 4인 이하
수 정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e0ff; margin-bottom: 5px;">〈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〉</div> 농업·임업·어업 중 법인 아닌자의 사업 + 4인 이하

p.103

기 존	018 고용보험법은 농업·임업·어업·수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()
수 정	018 고용보험법은 수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()

p.103

기 존	18번 해설 018: (×) 농림어수 + 법인× + 4인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안 함
수 정	018: (×) 농림어 + 법인× + 4인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안 함

p.115

기 존	136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의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(“최저구직급여일액”)으로 한다. ()
수 정	136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고,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(“최저구직급여일액”)으로 한다. ()

p.115

수 정	136-1 문제 추가 ①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. ()
--------	---

p.127

기 준	<p>05번 해설</p> <p>② 농업, 임업, 어업,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된다. 따라서 물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라 하더라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(고보령 제2조).</p>
수 정	<p>② 농업, 임업,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된다. 따라서 물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라 하더라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(고보령 제2조).</p>

p.153

기 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p>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(천재지변 등)로 발생한 사고 - ○</p> </td> <td>사례</td> <td> <p>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(○)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</p> </td> <td> <p>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- ○</p> <p>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- ○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<p>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- ○</p> </td> <td>사례</td> <td> <p>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(○)</p> </td> </tr> </table>	<p>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(천재지변 등)로 발생한 사고 - ○</p>	사례	<p>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(○)</p>	<p>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</p>	<p>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- ○</p> <p>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- ○</p>		<p>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- ○</p>	사례	<p>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(○)</p>
<p>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(천재지변 등)로 발생한 사고 - ○</p>	사례	<p>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(○)</p>								
<p>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</p>	<p>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- ○</p> <p>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- ○</p>									
<p>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- ○</p>	사례	<p>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(○)</p>								
수 정	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p>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(천재지변 등)로 발생한 사고 - ○</p> </td> <td>사례</td> <td> <p>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(x)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</p> </td> <td> <p>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- ○</p> <p>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- ○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<p>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- ○</p> </td> <td>사례</td> <td> <p>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(○)</p> </td> </tr> </table>	<p>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(천재지변 등)로 발생한 사고 - ○</p>	사례	<p>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(x)</p>	<p>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</p>	<p>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- ○</p> <p>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- ○</p>		<p>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- ○</p>	사례	<p>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(○)</p>
<p>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(천재지변 등)로 발생한 사고 - ○</p>	사례	<p>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(x)</p>								
<p>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</p>	<p>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- ○</p> <p>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- ○</p>									
<p>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- ○</p>	사례	<p>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(○)</p>								

p.170

기 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p>진폐 유족연금</p> </td> <td> <p>지급요건</p> <p>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지급액</p> </td> <td> <p>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(∴ 진폐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초과 不可)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<p>수급권자 및 순위 /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족보상연금과 동일</p> </td> </tr> </table>	<p>진폐 유족연금</p>	<p>지급요건</p> <p>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</p>	<p>지급액</p>	<p>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(∴ 진폐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초과 不可)</p>	<p>수급권자 및 순위 /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족보상연금과 동일</p>	
<p>진폐 유족연금</p>	<p>지급요건</p> <p>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</p>						
<p>지급액</p>	<p>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(∴ 진폐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초과 不可)</p>						
<p>수급권자 및 순위 /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족보상연금과 동일</p>							
수 정	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p>진폐 유족연금</p> </td> <td> <p>지급요건</p> <p>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지급액</p> </td> <td> <p>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<p>수급권자 및 순위 /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족보상연금과 동일</p> </td> </tr> </table>	<p>진폐 유족연금</p>	<p>지급요건</p> <p>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</p>	<p>지급액</p>	<p>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</p>	<p>수급권자 및 순위 /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족보상연금과 동일</p>	
<p>진폐 유족연금</p>	<p>지급요건</p> <p>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</p>						
<p>지급액</p>	<p>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</p>						
<p>수급권자 및 순위 /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족보상연금과 동일</p>							

p.172

기 존	징수사유 노⑤	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경우		
		수급권자or수급권자이었던 자가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 지급받은 경우		
		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		
	징수액	선의	그 급여액 해당 금액	
악의		그 급여액의 해당 금액의 2배		
수 정	징수사유 및 징수액 노⑤	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경우	선의	그 급여액 해당 금액
			악의	그 급여액의 해당 금액의 2배
		수급권자or수급권자이었던 자가 관련 신고의무를 불 이행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 지급받은 경우	그 급여액 해당 금액	
			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	

p.196

기 존	158: (X) 연금대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. 지문에서는 국민이 아니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수 정	158: (O) 연금대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. 지문에서는 국민이 아니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
p.197

기 존	168: (X) 1회,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
수 정	168: (O) 1회,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

p.217

기 존	18번 문제 정답 ①
수 정	①, ②

p.258

기 존	국가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(10명 미만)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)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(2분의 1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수 정	국가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(10명 미만)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)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(5분의 3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p.270

기 존	085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15만원,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는 월 10만원,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부모는 월 10만원으로 한다. ()
수 정	085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15만원,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는 월 10만원,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부모는 월 10만원으로 한다. ()

p.281

기 존	10번 문제 지문 ③ 가: 15, 나: 18, 다: 10, 라: 60
수 정	③ 가: 15, 나: 19, 다: 10, 라: 60

p.318

기 존	105 공단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. () 보건복지부장관 ⇒ 국세청장
수 정	105 공단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. () 국세청장 ⇒ 보건복지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 ⇒ 국세청장

p.333

기 존	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노00415	국가와 지자체는	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		국가와 지자체는	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.
		국가는	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수 정	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노00415	국가와 지자체는	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		국가와 지자체는	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.
		국가는	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
p.339

<p>마지막에 추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기타-§§39~41</p>		
추 가	권리구제	위법or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
	국민 등의 의견수렴	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
	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	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·시행,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, 법인, 단체,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⇒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.

p.343

기 존	024 해설 추가	024: (×)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없다.
	025 해설 수정	025: (×)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 고려
수 정		024: (×)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없다. 최저생계비는 구법의 표현이다. 현재는 '최저보장수준'으로 변경되었다.
		025: (×)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 고려

p.352

기 존	03문제 지문 ②, ④
	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
수 정	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.

p.353

기 존	04번 해설
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(사기법 §10).
수 정	05번 문제
	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(사기법 §10). 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
p.354

기 존	07번 문제 정답
	①, ⑤
수 정	①

p.355

기 존	09번 문제 정답
	③
수 정	①, ③

p.357

기 존	16번 문제 지문
	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수 정	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
p.359

기 존	22번 문제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 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수 정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 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
p.360 (기존내용)

기 존	22번 해설 ④ 최저생계비 ·최저임금 공표의무는 국가에게만 있다(사기법 §10).
수 정	④ 최저보장수준 ·최저임금 공표의무는 국가에게만 있다(사기법 §10).